

* 노동부는 1986. 4. 8 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에 이어 시행규칙중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효과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중 보건관련조항만을 발췌하여 게재한다<편집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정함
(제 4 조의 5)

제 4 조의 5) 보건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 영 제 13 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1. 산업용 화합물제조업
2. 도료제조업
3. 연탄제조업
4. 석면제품제조업

참고

(별표 1-1)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 및 시설 · 기계 · 기구기준 (제 5 조 관련)

1. 인력기준

구분 인력	사업장 150개소 또는 근로자 15,000인 당	자 격
의사	1인이상	예방의학전문의(다만, 보유인력의 과반수이내의 범위안에서 산업의 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로 대체할 수 있다)
간호원	2인이상	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한자(다만, 보유인력의 과반수이내의 범위안에서 의료법에 의한 간호원으로서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로 대체할 수 있다)
산업위생 관리기사	2인이상 1인이상	산업위생관리기사 1급이상 1인이상 및 산업위생관리기사 2급이상 1인이상

5. 제 1 차금속산업

6. 도금업

7. 자동차(2륜차 포함)용 축전지제조업

8. 영 제 23조 및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기업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계기구 기준과 지정에 관한 절차를 정함(제 6 조)

- 대행기관 지정 규정 신설
- 인력기준 강화(사업장 150개소 또는 근로자 15,000인당)

제 5 조 중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으로 한다.”를 “별표 1-1의 기준에 따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로 한다.

2. 시설기준

- 가. 건강상담실
- 나. 작업환경측정준비 및 분석실

3. 기계·기구기준

- 가. 분진, 특정화학물질, 유기용제 및 유해가스 시료채취기
- 나. 광전분광광도계 또는 광원광도계
- 다. 검지관 방식에 의한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측정기
- 라. 천평 (0.01 미리그램 이하까지 측정이 가능 한 것)
- 마. 소음측정기
- 바. 건조기
- 사. 분진측정기
- 아. 기온·기습·기류복사열·조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 자. 산소농도측정기
- 차. 일산화탄소 측정기
- 카. 현미경(배율 40-1500)
- 타. 피tot트튜브 등 국소배기 시설의 성능시험 장비

제 6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6 조(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등) ① 영 제 13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3 호 서식의 보건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부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 관
 2. 대표자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보유인력의 수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건물·시설 및 기계·기구 명세서
 4. 보건관리를 대행하고 있거나 대행하고자 하는 지역 및 당해지역의 사업장과 근로자 현황
- ②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자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 4 호 서식의 보건관리대행기관변경신고서에 그 변

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의 2 내지 제 6 조의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6 조의 2(지정의 취소) 노동부지방사무소장은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별표 1-1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기준을 위반한 때
2. 영 제 15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대행을 거부하거나 보건관리대행업무를 태만히 한 때
4. 휴업·폐업 기타사유로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명된 때

제 6 조의 3(보건관리대행 특례) 영 제 13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공업단지 관리법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2. 수출자유지역 설치법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자유지역
3. 제 1 호 내지 제 2 호에 준하는 사업장 밀집 지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제 6 조의 4(비치서류)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서류
2. 사업계획, 심사분석 및 결산에 관한 서류
3. 안전관리대행 또는 보건관리대행업무 수행에 관한 서류
4. 임원 및 직원명단
5. 기타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서류

제 6 조의 5(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

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간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 18 조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서 사업장 보건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는 법 제 2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로 선임된 후 1년이내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종사하게 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작업환경측정대상 사업장에 “갱내”를 포함하고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장소를 측정대상으로 추가함(제 39 조)

제 39 조(대상 작업장) 법 제 31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할 작업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진을 현저하게 발산하는 옥내사업장(갱내를 포함한다.)
2. 소음을 현저하게 내는 옥내사업장(갱내를 포함한다.)
3. 별표 3의 유기용제를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옥내작업장
4. 별표 4의 특정화학물질 등을 사용하는 옥내 작업장 및 코크스로의 상부 또는 이에 근접하여 코크스를 제조하는 작업장
5. 제 421 조제 5 호의 연 업무를 하는 옥내작업장 다만, 원격조작의 방식으로 하는 격리실에서의 업무를 제외한다.
6. 제 465 조제 3 항의 산소결핍 위험작업의 장소
7.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옥내작업장(갱내를 포함한다.)

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에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을 추가하고 산소결핍 작업장은 안전관리자 및 안전담당자도 산소농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함(제 41 조)

제 41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1 조(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법 제 31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 5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보건진단기관
2. 법 제 1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 또는 영 별표 10의 산업위생보건담당자. 다만, 당해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에 한한다.
3. 보건관리대행기관, 다만, 보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에 한한다.
4.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담당자 다만, 당해 사업장의 산소결핍 위험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에 한한다.

항공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을 면제 받을 수 있게하고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유해, 위험 업무의 범위를 13종에서 8종으로 축소함(제 43 조 3 항), (제외된 업무 : 고온·저온·중량물취급·갱내·초음파·계측기 간시)

제 43 조 2 항 단서 및 동조 제 3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 21 조 이용사 및 미용사법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 또는 신체검사를 받은자에 대하여는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과 동일한 항목에 한하여 이를 면제할 수 있다.

- ③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해·위험업무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년에 1회이상 특수건강진단을 받은자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1. 토석, 짚승의 털등의 분진을 현저히 비산하는 장소에서의 업무
 2. 이상기압하에서의 업무
 3. 착암기등의 사용에 의하여 신체에 현저한 진동을 주는 업무
 4. 보이라제조등 강력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서의 업무
 5. 유기용제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6. 특정화학물질등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7. 연 또는 4 알킬연의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8. 유해광선에 노출되는 업무

근로자건강진단의 검사항목에 빈혈검사와 혈청지오토(GOT) 혈청지피티(GPT)를 추가함
(30세 이상에 한함. 제 44 조 1 항)

제 44 조 제 1 항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 4 호 내지 제 6 호를 제 5 호 내지 제 7 호로 하며 동 항에 제 4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혈압, 요증당, 요단백 및 빈혈
4. 혈청 지오토(GOT) 및 혈청 지피티(GPT) 다만, 근로자의 나이가 30 세이상인 경우에 한다.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일정한 인력과 시설·기계기구를 갖추어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함(제 45 조 내지 제 47 조)

○ 시설기준 강화

제 45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5 조(건강진단의 실시기관) 법 제 32 조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별표 1 - 2의 기준에 따른 인력·시설 및 기계·기구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 46 조 제 1 항 중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 10 호 서식의 특수건강진단신청서”를 “제 45 조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기관으로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0 호 서식의 건강진단기관지정신청서”로 하고 동조 제 2 항 중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를 “건강진단기관으로”로 한다.

제 47 조 중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를 “건강진단기관으로”로 한다.

참고

(별표 1 - 2)

건강진단의료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제 45 조관련)

1. 일반건강진단

가. 인력기준

- (1) 의사 1인이상
- (2) 간호원 1인이상
- (3) 임상병리기사 1인이상
- (4) 방사선기사 1인이상

나. 시설기준

- (1) 진료실
- (2) 방음실(청력검사용)
- (3) 임상병리검사실
- (4) 엑스선 촬영실

다. 기계기구기준

- (1) 시력검사기
- (2) 청력검사기(오디오메타 및 오디오체커를 포함한다)
- (3) 혈액 미경
- (4) 백혈구 계산판
- (5) 백혈구 백분율 계산기
- (6) 항온수조
- (7) 원심분리기
- (8) 냉장고
- (9) 자동피펫
- (10) 단백굴절계
- (11) 광전광도계(비색계)
- (12) 엑스선 촬영기(직·간촬기 및 엑스선 현상기를 포함한다)

2. 특수건강진단기관

가. 인력기준

- (1) 예방의학전문의 1인이상
- (2) 간호원 또는 간호보조원 2인이상
- (3) 방사선기사 1인이상
- (4) 임상병리기사 1인이상
- (5)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화공학·약학 또는 산업보건학을 전

공한 자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2급이 상의
자격증 소지자 1인이상

나. 시설기준

- (1) 진료실
- (2) 방음실(청력검사용)
- (3) 임상병리검사실
- (4) 엑스선 촬영실

다. 기계기구기준

- (1) 시력검사기
- (2) 청력검사기(오디오메타 및 오디오체커를 포함한다)
- (3) 현미경
- (4) 백혈구 계산판
- (5) 백혈구 백분율 계산기
- (6) 항온수조
- (7) 원심분리기
- (8) 냉장고
- (9) 자동피폐
- (10) 단백굴절계
- (11) 광전광도계(비색계)
- (12) 엑스선 촬영기(직·간촬영기 및 엑스선 현상기를 포함한다)
- (13) 화학천평 또는 적시천평
- (14) 자동혈구 계수기
- (15) 간기능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 (16) 혈액화학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 (17) 신기능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 (18) 요 및 혈중신진대사 물질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비영리법인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업무의 위탁절차를 정함

제 61 조의 2 (비영리법인에 대한 위탁등)

- ① 영 제 25 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 18호 서식의 산업재해 예방업무위탁인가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노동부장관은 제 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 19호 서식의 인가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때에는 업무의 위탁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참고 시행령관련조항

제 25 조의 2(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업무) 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 17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담당자에 대한 교육
2. 법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 및 법 제 31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의 실시지도와 그 기록의 접검
3. 법 제 35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 방지사항에 관한 계획서의 검토
4. 법 제 3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계획의 검토 *